

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연번	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
1	2600	202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	원안가결
2	2590	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3	2591	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4	2592	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	원안가결
5	2593	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	원안가결
6	2594	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7	2595	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	원안가결
8	2596	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	원안가결
9	2597	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10	2598	「벼 재배면적 조정제」철회 촉구 건의안	원안가결
11	2599	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202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
- 제출일자 : 2025. 3. 10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장
- 제안이유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」 및 「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」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.
- 주요내용
 - 인원 : 5명
 - 활동기간 : 2024. 4. 11.(금) ~ 4. 30.(수) / 20일간
 - 활동사항
 - 202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
 - 검사의견서 제출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0.
- 제출자 : 김연수 의원
- 제안이유 :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·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5조)
 -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위탁계약의 해지 및 감독·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안 제11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0.
- 제 출 자 : 최미화 의원
- 제안이유 : 장성군 신중년층의 일자리창출 활성화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“신중년층” 관련 용어 신설(안 제2조)
 - “신중년” 용어 삽입(안 제7조)
 - “신중년 취업지원 사업” 관련 내용 신설(안 제8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7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제안이유 : 2025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변경사유 :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상환하여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
 - 재 원 :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, 이자수입, 수익금 등

구 분	항 목	수입 및 지출액		증감
		기정	경정	
수 입	계	1,198,469	17,696,731	증16,498,262
	예치금회수(a)	1,166,394	1,166,837	증443
	예수금수입(b)	-	16,298,167	증16,298,167
	이자수입(c)	32,075	231,727	증199,652
지 출	계	1,198,469	17,696,731	증16,498,262
	예수금원리금상환(d)	-	16,497,819	증16,497,819
	예치금(e)	1,198,469	1,198,912	증443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5.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7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제안이유 : 2년 연속 교부세 감액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외부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채 차입을 위해 「지방채정법」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- (발행현황) 해당없음
- (발행계획) 112억 ※ 발행한도액 : 385억원
- (대상사업) 1개 사업

사 업 명	지방채 차입선	발행 (예정)액	융자조건	이자율	발생이자 총액
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	지역상생 발전기금	112억	2년거치 8년균등분할상환	3.25%	20억

※ 변동금리 : 기준금리+0.25% (지방채 인수 시점 및 이율 조정 등으로 이자 총액 변동될 수 있음)

○ (상환계획)

발행액	상환기간	상환내역			
		이자(2년 거치)		원금+이자(8년 상환)	
		기 간	금 액	기간	금액
112억원	2년 거치 8년 상환	2025~2026	총 7.2억원 (연 3.6억원)	2027~2034	총 124.7억원 (연평균 15.6억원)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6.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7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관광과장)
- 제안이유 : 「2025 장성방문의 해」를 성공적 운영과 더불어 관광진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함.

▪ 주요내용

○ 정의 확대 (안 제2조 제1항 제7호)

- “지속가능관광”이란 관광객, 지역주민,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,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·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·환원되며,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·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.

○ 관광객 유치 지원 등 확대 (안 제4조 제1항 제4호)

-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활동과 관광여건 조성 및 지원하는 경우

○ 관광객 유치 지원 등 확대 (안 제4조 제1항 제5호)

-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

○ 지원사업 확대 (안 제6조 제1항 제3호)

-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관광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

○ 지원사업 확대 (안 제6조 제1항 제4호)

-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

- 위탁 대상 업무 등 확대 (안 제9조 제1항 제3호)
 -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품 운영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7.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7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- 제안이유 :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 제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.
-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 - 주간보호시설 입·퇴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 -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11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8.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7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- 제안이유 :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활·자립을 도모하기 위함.
- 주요내용
 - 조례 목적과 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 -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0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9.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7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건강증진과장)
- 제안이유
 - 저출산·고령화,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하고,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「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」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하기 위함.
 - 「전라남도-22개 시·군 출생기본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」 체결.
- 주요내용
 - 지급 대상·지급액 및 지급방법(안 제5조 ~ 제6조)
 - 지급신청 및 결정, 지급 중단 등(안 제7조 ~ 제8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0. 「벼 재배면적 조정제」철회 촉구 건의안

- 제출일자 : 2025. 2. 20.
- 제 출 자 : 서춘경 의원
- 제안이유
 - 2024년 12월 정부는 ‘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’에 따라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쌀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힘.
 - 이에, 단기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제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자율과 지원에 바탕을 둔 단계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.

- 주요내용 :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‘벼 재배면적 조정제’
철회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1.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

- 제출일자 : 2025. 3. 6.
- 제 출 자 : 차상현 의원
- 제안이유
 -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, 관리,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.
 -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명칭을 국립심혈관 연구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음.
 -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명칭변경은 사업규모 축소, 지역민의 의견수렴 부재, 법적·제도적 정당성의 부족으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명칭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함.
- 주요내용
 - ‘국립심뇌혈관연구소’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
(당초 : 국립심뇌혈관연구소 → 변경 : 국립심혈관연구소)
 - 지자체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촉구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